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감독관의 배치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배치인원

가. 함정

구분 (톤수)	경비함정		경비함정 외의 함정	
	1,000톤 이상	1,000톤 미만	500톤 이상	500톤 미만
1척당	2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나. 항공기: 항공기 1대당 1명 이상 배치

2. 배치기간: 최대 5년 이내

비고

1.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설계·건조·수리 또는 제작되는 함정 또는 항공기의 수량 등을 고려하여 그 배치인원을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2.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